제247회 연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연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3 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6 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0 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4 면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15 면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16 면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17 면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18 면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19 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검토보고서 ····· 20 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21 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23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9일

라. 발 의 자: 권종헌(대표발의), 김현규, 김미화, 최홍찬, 정홍숙, 김기준, 변준호, 소수련(8명)

2.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지원 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지원 기준, 방법, 신청 및 결정(안 제8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24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28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안 제8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2019년 1월 15일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2021년 4월 13일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 및 조사와 관련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은 가운데 연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관 계 법 령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29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다태아 출산휴가 일수 추가(별표 4)

다. 「자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당직·비상근무, 겸임근무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제4조 제1호의 ‘의하여’는 ‘따라’로 정비

○ 제3조, 제4조 제4호, 제5조 제1항의 ‘주민’에서 ‘국민’으로의 정비는 「지방공무원법」에 ‘주민’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대로 둠

○ 이외의 용어 정비 사항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삭제된 조항

○ 제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규정된 겸임근무 대상 공무원의 복무와 징계에 대하여 조례로 보완한 사항으로 현행 유지시켜야 함.

○ 제14조 제2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한 방법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현행 유지시켜야 함.

○ 제14조 제5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유지시켜야 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맞는 지, 삭제한 내용이 타당한 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외 사항은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1. 6. 8.>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0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1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2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등)

나. 열린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3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직무대리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4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5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6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237호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30일

다.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2.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30. ~ 9.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한 내용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